

2022년 대한탁구협회 1급 심판 자격시험(필기시험) 실시 안내

대한탁구협회에서는 탁구 1급 심판 자격시험(필기시험)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1급 심판 자격시험 절차

가. 1차 : 필기시험

나. 2차 : 실기시험

- 실시일 : 2022년 5월 14일 (토)

- 장 소 : 경기대학교 체육관 (수원)

(16227)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-42

- 실기시험 접수 및 세부일정은 2022년 4월 1급 심판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

- 2021년 12월, 2022년 4월 1급 심판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기시험 응시자격 부여

2. 1급 심판 자격시험 (필기시험)

가. 일 시 : 2022년 4월 24일(일) 오전 10시

- 09:00 ~ 09:30 (신청자 등록 확인 및 시험장 입실완료)

- 10:00 ~ 11:20 (필기시험 실시)

나. 장 소 : 경기대학교 성신관 3층 (수원)

(16227)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-42

※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

다. 접수기간 : 2022. 3. 10.(목) ~ 2022. 4. 19.(화) 18:00까지

라. 접수방법

- E-mail 접수 : ktta-umpire@naver.com

※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 또한 메일 통해서만 질의 및 답변가능

마. 평가방법 :

- 문항유형 : 필기시험 총 50문항 (객관식 45문항, 주관식 5문항)

- 합격점수 :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

바. 응시자격

- 2급 심판으로서,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급 심판 필기시험 신청마감일까지 본 협회 전국규모대회와 광역시·도협회 및 연맹이 주최하는 공식 경기에서 3회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자 (대한장애인

탁구협회 및 그 산하 시도협회에서 주최하는 대회 포함)

- 선수경력자의 경우, 본회에서 5년 이상의 선수활동을 한 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 자격을 부여한다. 단, 현재 일반부 선수와 대학부 선수는 응시하여 자격은 취득 할 수 있으나 선수 활동 중에는 심판으로 활동할 수 없다. 선수경력자가 본 위원회가 실시하는 1급 심판자격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경우에는 2급 심판자격을 부여한다. (2, 3급 심판 시험 면제)

사. 제출서류

- 1) 참가신청서(엑셀 파일) 1부.

※ 참가자 증명사진은 JPG 파일로 참가신청에 삽입 제출

- 2) 심판활동 확인서 3부. ※ 참가자 유의사항 참조

- 3)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동의서(한글 파일) 1부.

※ 첨부된 소정양식에 작성하여 서류 제출

아. 응시 납부 및 환불규정

- 응 시 료 : 6만원

- 납부계좌

○ 은행명 : KEB 하나은행

○ 계좌번호 : 224-910021-30105

○ 예 금 주 : (사)대한탁구협회

※ 응시자명과 입금자명 동일, 접수기한 내 응시료 미납시 미응시 처리 될 수 있음

- 환불규정

○ 신청일 ~ 강습회 시작일 기준 D-6일까지 취소 시 100% 환불

○ 강습회 시작일 기준 D-5 ~ 2일 이후 취소 시 강습비의 50% 환불

○ 강습회 시작일 기준 D-1일 및 결석 시 강습비 전액 환불 불가

자. 응시자 준비물 : 필기도구, 신분증 (필히 지참)

※ 신분증 미지참시 응시 불가

차. 참가자 유의사항

- 심판활동확인서

○ 심판활동확인서는 대한탁구협회 양식으로 제출해야 함

○ 심판활동 인정기간: 2021. 1. 1. ~ 2022년 1급 심판 필기시험 접수마감일

○ 활동 인정 기준: 본 회, 시도협회, 시·군·구 협회 및 연맹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식 대회에서 3회 이상 대회에 참가한 심판활동 확인서를 제출한 자 (대한장애인탁구협회 및 그 산하 시도협회에서 주최하는 대회도 포함)

- * 단, 본회, 광역시·도협회 및 연맹의 직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
- * 시·군·구 협회에서 주체 또는 주관하는 공식대회는 광역시·도협회의 확인절차에 따른 직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
- 디비전 대회인 경우 1일 참가 시, 1회 활동으로 인정
- 심판활동확인서는 수기로 작성 불가하며, 본 회 양식이 아닌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.
- 심판활동확인서 위조 적발 시 심판위원회 심의를 거쳐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를 회부
- 방역 지침 준수(정부방역지침에 준함)

끝.